

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·열람 일시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	-------------	------	-----

사업명	
위치	
면적	

사업자	사업자명	생년월일
	소재지	(전화번호)
	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

용도지역	조정내역		산정근거
	당초면적(m ²)	변경된 면적(m ²)	
계			
주거·상업·공업·준도시			
녹지·준농림			
농림			
자연환경보전			
환급청구금액		환급은행 및 계좌번호	

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2.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현지확인 (필요시)	→	결재	→	통보
신청인		처리기관 (지방해양수산청 · 특별시·광역시 · 특별자치시·도 · 특별자치도)		처리기관 (지방해양수산청 · 특별시·광역시 · 특별자치시·도 · 특별자치도)		처리기관 (지방해양수산청 · 특별시·광역시 · 특별자치시·도 · 특별자치도)		처리기관 (지방해양수산청 · 특별시·광역시 · 특별자치시·도 · 특별자치도)		